즉시접수	당일접수	기 사이라 제 대한법률구조공단
		ac.or.kri
제출자		www.ktc
총	건	CAS SOURCE CONTROL OF THE CONTROL OF

토지합필등기신청

1	,	년	일	일	-1 .1 .1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수	제		호	처 리 인		

부동산의	표시
101-	ا حللہ

등기	원인과 그 연월일	년	월	일	합병		
등 기	의 목 적	토지표시]변경	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 (등기용등록			주	소 (소 재 지)
신							
청							
인							



뱌	록	면	허	세	금				원
지	방	7117	육	세	금				원
세	액		합	계	금				원
				첨	부	서	면		
・토ス	·임야	대장	등본		통	(7) E	}		
• 등록	-면허/	세영수	=필확	인서	통				
• 위임	장				통				
					년	월	Ō]	
	위 4	신청인	j				<u>(1)</u>	(전화:)
	(또	는)위	대리	인				(전화:)
			지방	법원				귀중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토지합필등기신청

7)	人	년	월	일	-1 -1	٥)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宁	제		호	처리	인		

① 부동산의 표시

합필 전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70㎡

합필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- 1 대 30m²

합필 후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㎡ 이 상

② 등	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	4 월	3 일	합병		
③ 등	기 의 목 적	토지표시]변경	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 (등기용등			주	소 (소	재 지)
④ 신 청 인	이 대 백	700101-12	234567	7	·특별시 20(서초 <i>も</i>		서초대로88



	<u></u> 등	록 면	허	세	į] 		12,0)00 원
	⑤ 지	세		<u> </u>		2,4	l00 원		
	⑥ 세	계	÷	그 급		14,400 원			
				7	첨 투	L)	k-] 1	면	
	・토지·임	야대장	등본		2 동	\(\frac{7}{2}\)] 타〉		
	• 등록면	허세영=	수필확	·이서	1 통	<u>.</u>			
<i>삭1행</i>			, _ ,	_ ,					
710	· 위임장								
				20	017년	5월	26일		
	8	위 신	청인	이	대	백	<u></u>	(전화 : 010-1	234-5678)
	,	(또는)위	니 대리	기인				(전화:)
			서울	중앙 ズ	방법원		등:	기국 귀중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등기신청안내서 - 토지합필등기신청

■ 토지합필등기란

토지대장상 2필 또는 여러 필의 토지를 합필하여 1필의 토지로 된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국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벽지층 사용하고, 벽지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응 하였음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- ⑦ 합필 전의 표시, 합필의 표시, 합필 후의 표시로 나누어 기재합니다.
 - (i) 합필 전의 표시에는 합필하는 토지의 표시를,
 - (ii) 합필의 표시에는 합필되는 토지의 표시를,
 - (iii) 합필 후의 표시에는 합필의 결과 하나가 된 토지의 표시를 각 토지대장 등 본의 내용과 일치되게 기재하되,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 순으로 기재 합니다.
- ① 합필 전의 부동산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 경 (또는 경정)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합병"으로, 연월일은 토지대장에 표시된 합병일을 기재합니다.

③ 등기의 목적란

"토지표시변경"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④ 신청인란

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



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⑤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합필 전의 부동산 개수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(예: 2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1필지로 된 경우, 등록면허세는 2건으로 계산함)

⑥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⑦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⑧ 신청인등라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< 시·구·군청 >

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토지(임야)대장등본

합필사유가 기재된 합필 후의 토지(임야)대장등본과, 합필되는 토지(임야)대장 등본 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.



<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 기 타 >

- 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의 일부가 이전등기 되었거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합필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었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단독으로,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공동으로 합필 후의 각 지분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'소유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' 및 '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'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(등기예규 제1371호)
- ②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 변경 및 경정등기(토지분필·합병·지목변경 등) 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토지(임야)대장등본,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